

#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

2017. 4. 21.

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

## 1. 제안자: 성동구청장

## 2. 제안이유

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워스탠드를 구 출자기관에 위탁하여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,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 개요

- 1) 사업기간: 2017. 6. 1. ~ 2019. 4. 5.
- 2) 위탁시설: 파워스탠드 (언더스탠드 예비뉴 내)
- 3) 위탁대상: 구 출자기관에 위탁
- 4) 추진방법: 수의계약
  -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 시 수의계약 가능
- 5) 선정방식: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선정
- 6) 위탁사무: 창업지원, 일자리 창출 및 연계사업, 시설물 관리 등
- 7) 운영예산
  - 공공운영비 지원

- 창업 카페 등의 운영수입으로 경비를 자체 충당하기로 하고 부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

#### 나. 시설현황

- 1) 위 치: 왕십리로 63 (파워스탠드)
- 2) 규 모: 대지 835.28 $m^2$  / 연면적 704.50 $m^2$
- 3) 주요시설: 창업 지원공간(창업 카페), 교육장, 회의실, 사무실 등

#### 다. 추진근거

- 1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1조
- 2)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7조
- 3)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4)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6조 및 제10조

#### 라. 민간위탁 필요성

- 1)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나, 일자리가 줄면서 노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,
- 2)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한 파워스탠드를 구 출자기관에 위탁 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보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3) 청년 창업 및 취업준비생, 문화 예술인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“창업 카페” 등을 운영하여 창업 생계태 기반 조성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련법령

- 1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제8호사목
- 3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23조제4항

#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청년 창업지원, 일자리 사업 추진 등을 위한 파워스탠드를 구 출자기관에 관리 위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은 물론, 보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
- 파워스탠드 관리 위탁은 관련 법령 (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)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 출자기관을 행정재산 관리 수탁자로 선정하고, 창업지원, 일자리 창출 및 연계사업, 시설물 관리 등 사무의 민간 위탁과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수탁기관 기능과 위탁사무 연관성 등을 살펴 볼 때, 보다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여겨지며, 특히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

어려운 수익 사업(창업카페, 식품제조 판매 소규모 가게 운영 등)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

- 다만,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 선정시 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바, 합리적 기준에 의거 사업 능력, 전문성, 재정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, 향후 철저한 성과 관리 및 평가를 통하여 구 출자기관에 관리위탁 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